# 범죄 피해자

## 안내자료 8 – 피해자 피해 진술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기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때 피고인은 범죄자로 알려지게 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에 피해자가 특정 상황에서 법률에 의거해 법정에 서면 진술을 제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1999년 범죄 판결 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은 피해자 피해 진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해당 범법 행위가 피해자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진술은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에**만 관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 진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피해자 피해 진술을 법정에 제출하기를 원하면 피해자는 반드시 이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사 담당관은 피해자 피해 진술에 포함된 모든 자료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 기소관 혹은 검찰총장실은 담당관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피해자 피해 진술이 법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정에서 피해자 피해 진술을 낭독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자발적인 것입니다. 이 진술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직계 가족 혹은 피해자 대리인이 낭독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낭독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피해 진술을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 진술이 법정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법정 소송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혹은 진술 작성자가 경우에 따라 반대 심문을 받을 수도 있으며 범죄자가 (사본을 보관하진 못해도) 그 진술을 읽을 수 있고, 그 진술이 (아동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문서가 되며 언론이 그 진술을 보고 법정에서 낭독되거나 언급된 내용에 대해 기사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찰관은 피해자 피해 진술의 내용을 제안할 수는 없지만, 이 진술이 어떻게 법규에 맞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피해 진술이 언제 작성될 수 있는 지와 요건, 진술에 포함돼야 할 내용 등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기타 지원은 피해자 안내 전화 1800 633 063 혹은 (02) 8688 5511로 연락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Visit the Lawlink website](http://www.lawlink.nsw.gov.au/) 를 방문하십시오.

범죄 피해자를 위한 더 자세한 정보는 NSW 경찰 웹사이트 [Visit the NSW Police website](http://www.police.nsw.gov.au/) 를 방문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